

『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인구 증감, 도로 개설 등 환경 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(안 [별표]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도시여건과 생활권 등의 변화로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선주원남동의 푸르지오캐슬단지를 송정동으로 편입하는 등 8개 동 351필지에 대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지난 20년간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었음에도 1999년 이후 행정구역 조정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만큼 시대 변화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으며, 자연지리성, 생활편의성, 지역형평성,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경계조정 지역에 대한 홍보 및 각종 공부정리, 표지판·현황판 정비 등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